

한국의 도서심의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ystems and the Standards
of Books Deliberation in Korea

김 상 호 (Kim, Sang-Ho) **

◁ 목 차 ▷

1. 서 언	3.1 출판의 자유와 제한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활동	3.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심의규정
2.1 심의위원회의 구성	3.3 청소년보호법
2.2 심의실적 및 내용	4. 심의기준의 비교 분석
3. 도서심의 관련 법률 및 규정	5. 결 언
	<참고문헌>

< 초 록 >

우리나라에서 간행물심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하고,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간 간행물심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언론학, 법률학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도서에 한정하여 그것의 심의제도와 기준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 및 도서관 전문가,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사정 전자출판 분야 전문가 등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은 단지 유해한 도서의 유통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뿐으로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할 일과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의 심의실적과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면 한국간행물심의조정위원회로 개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넷째, 심의기준은 유해성의 범위나 상하위의 개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관련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윤리, 공공복리, 개인의 명예, 권리이지만, 실제 핵심이 되는 것은 선정성과 음란성이다. 여섯째, 간행물에 의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의 침해에 관한 항목을 심의기준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

要語 : 도서심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25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Deliberation on publication based on the Publication and Printing Promotion Act is carried out by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KPEC). The study of deliberaion on publication was accomplished in the point of view of communication, journalism and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 and the system of deliberation in Korea in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study are ; they need to appoint experts in the field of reading and library with deliberation committee, and to distinguish their fuctions and approaches between boundaries of law and administration; deliberation standard is short of the consistence in concepts and levels of principles; the real core terms of judgement are lasciviousness and lewdness, even though key words ar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social ethic, welfare, personal honor and right; they need to add the item for violation of the individual honor and right, to the deliberation standard.

Key words : Book Deliberation,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1. 서 언

도서의 내용, 수준, 가치는 여러 경로에서 평가된다. 도서관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언론이나 학술단체,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도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 정부당국이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는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의 생산과 유통, 독서를 금지하여왔다.

현행 우리나라의 도서심의제도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 시행을 법적으로 위임 받은 기구이다.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통합한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1970년에 발족하였으나, 곧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1989년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법정 기구가 되었고, 2002년에 그 설치근거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옮겨졌다. 오늘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서진흥의 주체가 수행해야 할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¹⁾ 관계 법률에 근거한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은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다.

간행물의 심의에 관한 국내 자료 대부분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행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간행물심의연감」, 「간행물심의보고서」, 월간 잡지 「간행물윤리」 등이 있다. 이밖에 동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되는 각종 연구자료 등이 있는데, 이들 자료들은 한결같이 출판, 언론, 법률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 간행물이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²⁾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을 심의하는 간행물은 첫째,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둘째,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3조 1항

1)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50.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법률 제6721호 (2002. 8. 26) 제2조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셋째, 청소년보호법 제7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로 세분된다³⁾

본 연구는 도서의 평가라는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활동과 법률상의 도서심의 근거 및 심의기준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도서의 평가와 선정기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간행물의 범위를 수입 추천된 외국간행물, 전자출판물, 정기간행물, 만화는 제외하고 단행본 의미의 도서로 한정하였다.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활동

2.1 심의위원회의 구성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데,⁴⁾ 위원을 추천하는 기구는 대한민국 예술원,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외국학 또는 외국어, 정기간행물의 제작 비평, 도서류의 창작 제작 유통 및 비평, 교육, 청소년 여성 종교 및 소비자,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영상 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및 협회로 제한하고 있다.⁵⁾ 여기에는 어떠한 독서나 도서관 기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말 현재의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독서 및 도서관계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위원회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3)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 18조.

4)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 17조

5)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령 제 11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⁶⁾ 세부적인 사항이 기술된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다섯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지는데, 도서의 심의는 그 중 제1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⁷⁾ 2005년 말 현재 소속 위원은 교수, 변호사, 국회 전문위원, 출판인, 언론인 등으로 모두 9명이다.⁸⁾

과거의 도서심의실적을 검토하면,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간행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소설, 사진집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교육, 독서, 문학, 사진, 전자출판,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나올 듯 하다.

2.2 심의실적 및 내용

2004년 한 해 동안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모두 147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43,022 권의 간행물을 심의하고, 그 가운데 3,719권을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276권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전년도에 비하면 심의권수와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은 감소한 반면, 유해간행물 결정은 증가하였으며, 국내 간행물의 결정 비율과 오프라인 간행물의 비중은 낮아지고, 반대로 수입 간행물의 결정과 전자출판물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오프라인의 도서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제1심의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4,162권을 심의하여 790권을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였다. 전년에 비하면 심의 권수는 감소하였으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결정이 늘어나 결정 권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790권의 청소년 유해간행물 가운데 다수인 전자출판물을 제외한 단지 도서는 196권에 불과하다. 전년에 비해 도서는 26% 감소하고, 전자출판물은 183% 증가했다. 2000년 이후의 도서심의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0조

7)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4 간행물심의연감. 서울 : 동위원회, 2005. 191.

<표 1> 최근 5년간의 도서심의 실적

연 도	심의권수	청소년 유해	유 해		의견제시
			청소년 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2000	2,527	368			67
2001	2,577	259			48
2002	2,791	237			78
2003	2,941	266	3	11	34
2004	3,397	196		2	63
계					

도서 196권은 유형별로 보면 소설과 사진집이 그 대부분인 177권을 차지한다. 85권의 소설은 대부분 일서를 번역한 것이고 국내 작가에 의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⁹⁾ 그리고 196권의 도서는 36개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는데, 자사 출판물 가운데 단지 1권의 도서가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출판사는 21개 사이나, 3개의 출판사는 20권 이상의 자사 발행도서가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다.¹⁰⁾ 특정 출판사를 중심으로 유해간행물이 다량으로 발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외부의 심의의뢰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조사 수집한 간행물은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유해성 우려 간행물, 청소년 유해간행물, 의견제시, 불문 등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청소년위원회에 관보 고시를 요청을 하며, 유해성 우려 간행물은 소위원회에서 복심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되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004년 심의도서 3,397권 중 2,589권은 문화부에서 의뢰한 것이고, 나머지 808권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집한 것이다. 전자 가운데 단지 9권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반면, 후자에서는 187권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다.¹¹⁾ 자체 수집한 도서의 결정 비율이 의뢰 도서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심의 결정률 0.3% 수준에 불과한 문화부의 심의 의뢰제도는 그

9) 상계서, 65-67, 71.

10) 상계서, 60-62.

11) 상계서, 58.

폐지를 마땅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도서심의 관련 법률 및 규정

3.1 출판의 자유와 제한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¹²⁾ 그러한 헌법질서에 도서심의 행위가 배치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¹³⁾ 하지만 헌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헌법에서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¹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써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⁵⁾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헌법의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은 성 풍속과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음란한 문서, 도화를 반포, 판매, 제조한 자,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게 하였다.¹⁶⁾ 이는 간행물에 있어서 헌법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12)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2조

13) 김형성, 간행물심의와 표현의 자유. 서울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5. 3.

14) 대한민국헌법. 제21조 4항

1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16) 형법. 법률 제7623호(2005. 7. 29) 제 243조, 제 244조, 제 309조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¹⁷⁾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과 질서 유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라 하겠다.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의 관계 규정은 명백히 국가나 사회, 타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는 도서에 한정해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을 정당화 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가 아니다. 단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고, 해당 도서의 유통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3.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심의규정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출판, 인쇄산업의 지원과 육성, 유통질서의 확립, 그리고 간행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도서심의에 관한 기본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는 간행물의 심의에 관한 별도의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9조에 따라 그 의미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동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유해간행물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 유해간행물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관계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정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¹⁸⁾ 따라서 기본법에 근거한 도서심의를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특정 도서

17) 국가보안법. 법률 제5454호(1997. 12. 13) 제7조
18)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 11항

에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유해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인 것이다.

관계 조문에 충실할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반국가적 내용의 도서를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안전이나 질서는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며,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간행물 심의가 사법적 행위가 아닌 행정적인 행위라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예와 같이 한국간행물심의조정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기능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자에 비하면 간행물의 책임을 구현하는 전자의 의미는 모호하다.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보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조문의 1호와 2호, 3호가 간행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내용인 반면,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구체적 의미를 가리키는 4호의 내용은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 진흥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 저작과 발행에서의 일이라는 점에서 양서권장은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현재 위원회의 일이 중심과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 상의 양서권장이 독서의 관점에서 접근할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유해간행물로 결정해야 할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둘째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셋째,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이다.¹⁹⁾ 여기에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의 한계가 포함되어

19)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1항 1, 2, 3호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주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심의규정의 심의기준에서 참고할 수 있다. 문제는 ‘뚜렷이’의 표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유해성의 범위가 아닌 정도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판단이 윤리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심의규정은 심의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²⁰⁾ 심의규정에서 그 근거로 밝히고 있는 법률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²¹⁾ 간행물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심의기준을 별표로 제시하고 있다.²²⁾

심의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심의대상 간행물의 선정 경로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의 의뢰, 둘째, 위원회의 자체 판단, 셋째, 청소년 유해간행물에 한정해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30명 이상의 서명 요청, 넷째, 기타 기관, 단체, 협회 등의 의뢰 또는 간행물의 납본을 포함한다.²³⁾ 지나치게 그 경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심의규정에서 그 분장업무를 기술함에 있어서 일부 자구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제1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심의하도록 한 예와 같이 제2, 제3심의위원회의 일을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²⁴⁾ 그것이 상위법의 관련 조항을 충실히 표현한 것이라고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3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정 기구였다.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

20) 심의규정. 1997. 7. 25시행. 제1조

21) 심의규정. 제3조

22) 심의규정. 제4조

23) 심의규정. 제5조

24) 심의규정. 제9조

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⁵⁾

여기서 도서심의와 관련한 항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다. 매체물은 동법 제7조에서 그 범위를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둘째,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셋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넷째,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다섯째, 정기간행물과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여섯째,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으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²⁶⁾ 만약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 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²⁷⁾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첫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둘째,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셋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넷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다섯째,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의 적용은 당

25)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정), 법률 제581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1조

26) 청소년보호법, 제2조 3항

27)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8조 2항

시 국내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게 하였다.²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일반심의기준’에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심의 결정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고, 포장을 하고, 청소년에게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거를 명하게 되어 있다. 법률 상 도서의 청소년유해표시는 앞표지와 뒷표지의 우측 상단에 60 × 15 mm 이상인 적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백색 글씨로 ‘19세미만 구독불가’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정해졌다.²⁹⁾

4. 심의기준의 비교 분석

헌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규정에서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주제 항목은 각기 차이가 있다. 헌법의 경우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이며, 형법의 경우 그것은 성풍속, 명예이고,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질서이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경우 그것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사회의 성도덕,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질서이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는 그것은 성적인 욕구 자극,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악물의 남용, 인격과 시민의식,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법률에 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주제 항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였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28) 청소년보호법, 제10조

29)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4조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의 심의기준에서는 유해간행물과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구분하여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주제 항목을 적고 있다. 그것은 유해간행물의 경우에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 성도덕이며,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경우에는 선정성, 폭력·잔인성, 성범죄와 유해 약물, 윤리관, 반사회성과 비윤리성,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후자의 항목이 성도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전자의 항목은 사회적 질서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법률과 간행물의 독자층을 고려하더라도 도서의 심의기준은 크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사회윤리와 공공복리, 개인명예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되었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는 그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해당 항목의 심의기준 역시 그와 같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그 시행령의 폭력과 잔인성, 성범죄와 유해 약물, 그리고 반사회성과 비윤리성 항목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체제에 관한 문제를 반사회성과 비윤리성 항목에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둘째, 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성 풍속과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음란한 문서, 도화를 반포, 판매, 제조한 자를 처벌하게 한 것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령으로 마련된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밝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상당부분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데, 특별히 음란성, 선정성과 관련해 해당 행위의 분류가 모호하고, 상하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헌법은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형법에서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규정에서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사회윤리와 공공복리의 경우와 달리 개인명예에 대한 어떠한 항목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출판행위에 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아무런 도움도 제공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해간행물의 범주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포함한다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도서는 당연히 법정 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그 일은 법의 심판을 묻기 전에 간행물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문제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질서, 범법의 행위를 윤리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심의기준과 실적, 입법취지에 충실한다면 위원회는 한국간행물청소년성윤리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마땅하다.

5. 결 언

우리나라에서 도서의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의제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본 위원회 외에 간행물의 유해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서의 심의는 제1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명시한 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기구에 독서 및 도서관 기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은 심의대상 도서의 경향을 고려하여 법률, 교육, 문학 이외에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사진, 전자출판

30) 형법. 법률 제7623호(2005. 7. 29) 제 243조, 제 244조, 제 309조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1심의위원회가 2004년 심의 결정한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전자출판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서는 그 1/4 수준이다. 그리고 심의한 도서는 문화부에서 의뢰한 것이 전체의 3/4 수준이나, 정작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것의 거의 대부분은 자체 수집한 것이다. 심의 결정률이 0.3% 수준에 불과한 문화부 심의 의뢰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심의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헌법의 다른 조문과 관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크지 않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활동은 국가나 사회, 타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해한 도서의 유통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넷째,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서는 ‘간행물의 심의’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유해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간행물을 가려내는 행위로 해석된다.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해야지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섯째, 심의기준은 유해성의 범위나 상하위의 개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며, 유해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벗어나기 어렵다.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인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심의규정의 관계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심의규정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문에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심의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수이고, 명목과 실질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없지 않다.

일곱째, 도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윤리, 공공복리, 개인의 명예, 권리이고, 관련된 하위 개념의 여러 용어들에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도서에서 실제 핵심적인 것은 선정성과 음란성이다. 법정 기구인 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 성윤리부문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행물에 의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의 침해부문을 당사자

들이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예와 같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서지학연구』 29집(2004. 12). 345-360.
-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5.
- 윤청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전 방향」.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3.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4 간행물심의연감」. 서울: 동위원회, 2005.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아시아 3개국 간행물윤리제도조사」. 서울: 동위원회, 2001.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외국의 간행물심의 법제」. 서울: 동위원회, 2004.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일본 간행물윤리제도 조사 보고서」. 서울: 동위원회, 1999.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http://www.kpec.or.kr/html/data_06/data05_01.asp

부록 : 심의기준(심의규정 제4조 별표)

제1장 일반심의기준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 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이하 각호 생략)
-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④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 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5조(폭력·잔인성 등)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6조(성범죄와 유해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범죄와 유해 약물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7조(건전한 윤리관 저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윤리관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8조(반사회성, 비윤리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9조(청소년 유해 행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